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학교의 '약속'

잘 지켜지고 있나요?

종교의 자유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 보장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 내가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스스로의 신념, 생각,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지난 12월,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서 종교예배, 종교행사 강요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종교자유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의 1인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뒤늦게나마 '앞으로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당연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연한 약속! 예일디자인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예일여자고등학교, 예일여자중학교, 예일초등학교, 예일유치원 등 학교법인 예일학원에 소속된 모든 학교들이 책임감 있게 준수해 나가야 할 기본입니다. 2014년부터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2.

1.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교행사, 종교의식, 종교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행사, 종교의식, 종교수업 대신 참여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숙제를 내준다거나, 차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학교가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여러분의 종교선택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연락주세요. 학교에 부당한 일을 함께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메일: asunaro@asunaro.or.kr | 전화: 070-4228-1908 | 문자: 010-5059-3249 (위영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이렇게나 많은 법률, 국제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판결 (요약)

종립학교는 여전히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지고, 학생 역시 종립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중략)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한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2010.4.22. 선고, 2008다38288판결문 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 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대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